www.forest.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2022. 10.

산 림 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2022. 10.

① **입목등록**은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며,

② **입목등기**는 각 지역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③ 본 안내서는 입목등록·등기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일 뿐이며, 본 안내서 내용은 실제 적용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목 차

Ⅰ. 입목등록과 입목등기의 목적 및 차이 ····· 1

Ⅱ. 절차별 세부 안내 ····· 2

Ⅲ. 자주하는 질문 ····· 9

■ 참고자료 ····· 13

1. 입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15
2. 입목에 관한 법률 ····· 17
3.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4. 입목등기 규칙 ····· 24
5.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 27
6.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 ····· 30
7. 입목등록 가능 나무 법령해석(법무부, 2015. 4. 21.) ····· 40
8. 입목등기 말소 법령해석(법무부, 2006. 9. 8.) ····· 43
9. 입목등록원부(등본 · 초본) 발급신청서 서식예시 ····· 44

Ⅰ 입목등록과 입목등기의 목적 및 차이

- **관련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입목등기규칙
- **입목등록**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
- **입목등기**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

신 청 서 작 성	• 신 청 인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식에 작성
입목등록신청서 제출	• 신 청 인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시·군·구	접수된 서류 검토 현지를 방문하여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기 안 및 결 재	• 시·군·구	결재
신청인에게 통보	• 시·군·구	입목등록원부 사본 발부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세 금 납 부	• 신 청 인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기신청서 제출	• 신 청 인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신 청 인	등기소를 방문해 수령

Ⅱ 절차별 세부 안내

1 입목조사 및 신청서 작성

■ 입목조사

- **입목등록**을 하려는 입목에 대해 생립하는 면적, 수종, 수령, 수량(㎥, 본)을 조사
- **수량**의 경우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지목이 산지로써 대량 또는 대면적으로 현지 여건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로 수량(㎥, 본)을 조사할 수 있음
  - 표준지로 조사방법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산림청 예규)의 임황조사를 따르되, **표준지 조사면적은 대상 면적의 5% 이상으로 함**
  - **표준지 조사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2급 이상의 소지자가 조사하고 작성
  - 표준지 조사방법으로 하였을 때에는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수고조사 및 계산서', '표준지 재적조서 및 축적 산출서' 등을 제출

    ※ 표준지 조사의 경우 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현지 상태 확인이 가능함
- **묘목, 조경수**는 본수만 조사할 수 있음(축적조사 생략가능)
- **조사연도**는 되도록 등록신청 해당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조사
  - 위 기준 이상이라도 축적과 본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인정 가능
  - 위 기준 이내라도 축적과 본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다시 조사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입목이 신청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 입목등록신청서 반려사유에 해당됨

- **조사목의 표시방법**
  - 토지 또는 다른 수목의 집단과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해당되는 입목 하나하나에 표시를 해야 함

■ 신청서 작성

- **(서식위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 [고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2017. 5. 30.)

  ※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항상 최신 서식을 사용해야 함

- **(수목 생립부분의 면적, 명칭 또는 번호)**
  - 1필의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수목을 등록할 경우에는 명칭 또는 번호 생략 가능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과 일치하여 작성

- **(수종)** 수종명을 기재, 수종이 여러 개일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수령)** 수령이 여러 개로 분포하는 경우 평균수령을 기재하거나 아래와 같이 기재

평균수령		
최하수령	~	최고수령

- **(수량)** 축적(㎥)과 본수를 기입
- **(조사년도)** 입목을 조사한 연도를 기재함
- **(기타사항)** 입목등록을 말소하려 할 때에는 「입목등록 [√] 변경신청서」를 사용하며, 취득(변경)사유란에“입목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용”으로 표기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예시〉

입목등록 [ ] 신규 [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일련번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이 대 백	생년월일 1970. 01. 01.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동촌길 300 (전화번호:010-1234-5678)	입목소유자와의 관계 본인

토지(임야) 소재지	주소 경기도 광주군 척도면 웅도리 산 15	면적 50,000㎡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이 대 백	생년월일 1970. 01. 01.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동촌길 300	전화번호 010-1234-5678
입목 소유자	성명 이 대 백	생년월일 1970. 01. 01.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동촌길 300	전화번호 010-1234-5678

	수목 생립부분의 면적(㎡), 명칭 또는 번호	수 종	수 령	수량 (㎥,본)	조사년도
신청내용	20,000㎡ 서북쪽 노루골	잣나무	25	400㎥ 1,000본	XXXX
		낙엽송	13	450㎥ 1,500본	XXXX
		밤나무	17	400㎥ 2,000본	XXXX
취득(변경) 사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등록 [√] 신규 [ ] 변경 신청합니다.

2022 년 10 월 일

신청인 이 대 백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서 내용과 대조 지번, 토지 및 입목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확인 2.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민원실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입목등록원부 사본(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첨부

210㎜×297㎜(백상지 80g/㎡)

2 입목등록신청서 제출

■ 제출(접수)하는 곳

- 입목등록신청서는 **시 · 군 · 구에 제출**
  - 대부분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나 시 · 군 · 구별로 접수 받는 곳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

■ 제출서류

- 입목등록(변경) 신청서 1부.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란?

-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같은 경우**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음 중 하나 제출
  - 생립하고 있는 입목의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입목등록 승낙서 원본
  -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법원 결정문서 사본

※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자(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서류검토

- 입목등록(변경)신청서 기재사항 검토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진위여부 확인
  -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할 필요

■ 현지확인

- 신청서에 명시된 위치, 면적, 수종, 수령, 수량을 현지에서 확인
- 연접 지번의 타소유자 토지의 나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4 기안 및 결재

■ 기안 및 결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입목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음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함

5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에게 보내는 서류

- 입목등록원부 사본
-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첨부

6 세금납부

■ 납부하는 곳

- 입목이 소재한 시·군·구 세무부서

■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1천분의 20)
  - 시가표준액은 시·군·구별로 작성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됨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 (100분의 10)

  ※ 관련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등록면허세** : 건당 12,000원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100분의 20) = 2,400원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납부하는 방법

- 입목등록원부를 지참하고 입목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취득세신고서」와 「등록면허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하나의 고지서로 발급됨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하나의 고지서로 발급됨

- 발급받은 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입목등기 신청시 제출

7 등기신청서 제출

※ 입목등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문의 : ☎ 1544-0770

■ 제출(접수) 하는 곳

-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목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 신청서 서식 위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기타등기
- 등록된 서식
  -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입목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토지분할)
  -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토지합병)
  -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일부벌채)
  - 입목멸실등기신청
  - 입목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신청서 작성방법과 예시는 각 신청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음
- 신청서 서식은 항상 최신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해야 함

8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
-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

Ⅲ 자주하는 질문

1.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는?

- 지목 및 수종에 관계없이 2 그루 이상이면 됨
- 담장 안의 대지에 심어진 나무도 등록이 가능함
- 대나무도 등록이 가능함
- 1 그루인 경우는 등록할 수 없음

※ 관련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2. 분재수도 입목등록이 가능한지?

- 토지에 부착된 분재수는 등록이 가능함
- 화분에 심어진 분재수는 등록이 불가능함
- 가식된 형태(완전히 심어지지 않은 상태, 이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의 수목도 등록이 불가능함

※ 관련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3. 입목등록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음

>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입목등록시에도 입목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일관된 행정처리를 할 필요(입목등록은 되는데 입목등기가 안되어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므로 지자체담당자는 이를 잘 설명할 필요)
- 따라서, 입목등록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입목등록승낙서**를 받아 그 원본을 입목등록 관청 부서에 제출해야 함

4. 조림대장을 입목소유권 인정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할 수 없음
- 조림대장은 그 나무를 누가 심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일 뿐이며, 소유권을 인정하는 서류는 아님

5. 입목등록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인정받을 수 없음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목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6. 국유림 분수림계약자 및 대부계약자가 입목등록을 할 수 있는지?

- 등록할 수 없음
-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함

7. 입목등록 말소는 소유권자가 원하면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지?

- 말소할 수 없음
- 말소는 입목이 벌채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함
- 입목등기가 되어 공시되고 있는 입목에 대하여 해당 입목이 벌채 등으로 멸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목등록원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입목이 존재하는 한 말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법무부 법령해석, 2006.9.8.)

8.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는?

- 입목등록을 말소하고 입목등기를 말소함
- 「입목등기처리규칙」 제6조(변경등기의 신청)에서 “법 제2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목등록을 먼저 말소해야 함

9.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제3항에서는‘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입목등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여 산림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 수도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6조(법정지상권) 제1항에서는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입목을 별도로 등기한 자에게 지상권까지 부여하여 산림경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임

10. 입목등기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 등기된 입목이 벌채되는 등 멸실이 된 경우 즉시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함
-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제1항에서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1. 사과나무는 어느 부서에서 입목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 각 지방지차단체에서 사무분장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

12. 공유지분의 필지 내 입목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문의전화

문의내용	담당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입목등록	입목이 소재한 **시 · 군 · 구**	민원실
입목등기	입목이 소재한 관할 **등기소**	1544-0770
제도운영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참 고 자 료

1. 입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15

2. 입목에 관한 법률 ····· 17

3.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4. 입목등기 규칙 ····· 24

5.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고시) ····· 27

6.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 ····· 30

7. 입목등록 가능 나무 법령해석(법무부, 2015. 4. 21.) ··· 40

8. 입목등기 말소 법령해석(법무부, 2006. 9. 8.) ····· 43

9. 입목등록원부(등본 · 초본) 발급신청서 서식예시 ····· 44

참고 1

입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973. 03. 09. :「입목에 관한 법률」제정 · 시행

- 산림개발을 촉진함에 있어서는 장기성 저리자금의 융자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융자를 얻기 위한 담보물로서는 충분한 재산가치를 지닌 입목이 매우 적합한 것이나 현행 법체제하에 있어서는 입목을 그 지번인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는 방법이 미흡하여 그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산주의 적극적인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인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림 및 그 사후관리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3. 12. 08.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 시행

-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별표에 게기한 수종중 7종이내로 조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그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서 별표에 게기한 수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시행 1973.12.8.]

수 종 명					
1. 잣나무	6. 편 백	11. 포푸라류	16. 호도나무	21. 솔송나무	26. 단풍나무
2. 젓나무	7. 삼나무	12. 밤나무	17. 황철나무	22. 오리나무	27. 가문비나무
3. 낙엽송	8. 비자나무	13. 대나무	18. 서나무	23. 붉나무	28. 피나무
4. 리기다소나무	9. 소나무	14. 리기테다	19. 박달나무	24. 아까시아	29. 사시나무
5. 골 솔	10. 참나무류	15. 오동나무	20. 구상나무	25. 황벽나무	30. 자작나무

- **제6조 (등록과 임야대장)**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임야의** 임야대장의 연혁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983. 12. 08.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제6조 (등록과 대장정리)**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목은 그것이 심어진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입목등록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의 입목에 대하여는 입목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하게 규정함(령 제6조).

1995. 07. 15.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 【개정이유】입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대상수종을 잣나무·소나무 등 30개 수종에서 모든 수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입목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2008. 05. 21.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제6조 (등록과 대장정리)** 삭제

  ☞ 【개정이유】현재 입목등록원부에 입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령 제6조), 이는 「지적법」에 따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입목에 관한 사항은 입목등기부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보호되므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입목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령 제6조)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 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2012.2.1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 삭제 〈2012.2.10.〉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전문개정 2012.2.10.]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0.]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부동산등기법」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2.10.]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2.10.]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2.10.]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부 칙 〈제11303호, 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11.] [대통령령 제23848호, 2012.6.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7·15, 2008.5.21., 2012.6.12.〉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6.12.]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12·8, 1995·7·15, 2012.6.12.〉

[제목개정 2012.6.12.]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8, 2012.6.12.〉

제6조 삭제 〈2008.5.21.〉

제7조 삭제 〈2012.6.12.〉

제8조 삭제 〈2012.6.12.〉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2.]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부 칙 〈제23848호, 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4

입목등기 규칙

[시행 2016.8.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6.27., 전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3. 수종(樹種)·수량(數量)·수령(樹齡)
4. 조사연도
5.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7.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9. 등기의 목적

10.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1. 등기소의 표시
12. 신청연월일

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입목등록관청"이라 한다)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⑤ 전자문서로 작성된 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22조의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9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2668호, 2016.6.27.〉 (법무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⑦ 생략

참고 5 산림청 고시 제2017 - 57호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시행 2017. 5. 30.] [산림청고시 제2017-57호, 2017. 5. 30.,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등록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입 목 등 록 원 부

① 토지(임야) 소재지	주소		면적 ㎡	② 입목등록 자치단체	
③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④ 입목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⑤ 입목 생립부분의 위치명칭 또는 번호										
⑥ 면 적	㎡	㎡	㎡	㎡	㎡	㎡	㎡	㎡	㎡	㎡
⑦ 수 종										
⑧ 수 령										
⑨ 수 량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⑩ 조사년도										
⑪ 처리년월일										
⑫ 변동 년월일										
⑫ 변동 사유										
⑬ 비 고										
⑭ 조사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목등록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 · 비치합니다.

작성 요령

1. 입목등록원부는 지번별로 작성한다.
2. 입목등록 자치단체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시 · 도 ○○시 · 군 · 구)
3. '수령'란에는 나무의 나이를 기재한다.
4. 수량은 입목축적을 기재하되, 묘목이나 조경수 등은 본수로 기재할 수 있다.
5. 조사 · 확인자는 현장을 조사 또는 확인한 담당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210㎜×297㎜(백상지 80g/㎡)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입목등록 [ ] 신규 [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일련번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목소유자와의 관계

토지(임야) 소재지	주소	면적 ㎡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목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목 생립부분의 면적(㎡), 명칭 또는 번호	수 종	수 령	수량(㎥,본)	조사년도
취득(변경) 사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등록 [ ] 신규 [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서 내용과 대조 지번, 토지 및 입목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확인 2.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민원실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입목등록원부 사본(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첨부

210㎜×297㎜(백상지 80g/㎡)

참고 6 서식 및 작성예시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등기관 확인	각종통지
	제 호			

입목의 표시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입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호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신청인				

취 득 세(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농 어 촌 특 별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첨 부 서 면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기 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 입목등록원부등본	통	
· 입목도면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입목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입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입목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등기관 확인	각종통지
	제 호			

① 입목의 표시
경기도 광주군 척도면 웅도리 산15 **임야 50,000m²** **내 서북쪽 노루골 20,000m²** **잣나무 25년생 1,000주** **낙엽송 13년생 1,500주** **밤나무 17년생 2,000주** **조사연도 2012년** **[등록문서번호 : 100번]** **이 상**

②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③ 신청 근거 규정	입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호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④ 신청인	이 대 백	700101-1234567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동촌길 300	

⑤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1,000,000 원	
⑤ 지 방 교 육 세	금 100,000 원	
⑤ 농 어 촌 특 별 세	금 원	
⑥ 세 액 합 계	금 1,100,000 원	
⑦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12-12-12345678-0	
	일괄납부 : 건 원	
⑧ 첨 부 서 면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 입목등록원부등본 1통 · 입목도면 1통 삭1행 ~~· 위임장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기 타〉	

2017년 4월 3일

⑨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010-1234-5678)

(또는)위 대리인 (전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입목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입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입목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입목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토지를 처분(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한 때에는 그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도 그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즉, 입목의 소유권도 이전되며 또한 저당권 등의 효력도 입목에 미친다), 수목의 집단만을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입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이때의 신청서 작성례입니다.

등기신청방법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전호에 게기한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입목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입목의 표시란

㉮ 입목이 존재하는 토지의 표시

1필의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집단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상의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만, 수목집단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부의 등기기록상의 표시 사항 이외에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입목등록원부에 기재된 수종, 수량, 수령, 조사연도를 기재합니다.

㉰ 토지의 소재 및 지번, 지목 및 면적은 토지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

㉮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의 신청인 경우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라고 기재하고, 지상권자의 신청인 경우에는 그 지상권의 순위번호를 (을구 제00번) 추가 기재합니다.

㉯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의 신청인 경우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라고 기재하고, 지상권자의 증명인 경우에는 그 지상권의 순위번호를 (을구 제00번) 추가 기재합니다.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의 신청인 경우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란

㉮ 신청인이 개인인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법인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신청인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⑤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란

㉮ 매 1건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⑧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⑨ 신청인등란

㉮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날 및 관할등기소를 기재하며, 관할등기소는 입목이 존재하는 토지의 관할등기소입니다.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입목등록원부등본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므로,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원부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목도면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는 입목도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단,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과 · 소〉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기 타〉

① 토지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기의 실행으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기존의 등기상 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목등기기록에 전사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저당권자(같은 법 제18조)를 제외한 등기기록상 권리자는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지상권자의 신청의 경우 소유자 포함)

㉯ 입목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승낙서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대표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소유권증명서

㉮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자의 표시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부합되어야 하며(표시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증명자의 증명서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의 신청인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등)본, 입목등록원부등본, 입목도면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참고 7 법무부 법령해석 (2015. 4. 21.)

「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검토의견

1 검토 배경

- '15. 4. 산림청, 「입목에 관한 법률」의 '수목의 집단' 법령해석 요청

2 질의 요지

-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수목의 집단'이 지목 및 수종의 제한 없이 2본 이상이면 되는지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입목등기가 가능한 수목은 지목 및 수종에 관계 없이 2본 이상이면 됨

- 「입목에 관한 법률」 (이하 '법')과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시행령')은 지목, 위치, 수종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나. 을설 : 입목등기가 가능한 수목은 2본 이상이되,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등에서 생립하는 수목은 제외됨

- 법 제정 이유는 입목을 그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담보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조림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산림개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고 (1973. 2. 6. 제정이유서),
-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 중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 것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 검토 결과

- **(현행 법령의 문언적 의미)** 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입목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고,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 시행령 제1조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를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결국, 규정상으로는 입목 등기가 가능한 수목과 관련하여 지목이나 수종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시행령 개정 경과)** 1973. 12. 8. 제정된 시행령 제6조는 '시장 등은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임야의 임야대장 연혁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의 입목에 대하여는 입목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으나,
  - 법에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입목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1983. 12. 8. '시장 등은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 명의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가,
  - 2008. 5. 21. 입목에 관한 사항은 입목등기부와 토지등기부에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 안전이 확보되므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삭제됨

- **(결론)** 현행 법령의 문언적 의미, 시행령 개정 경과를 고려할 때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관련 법령 등

「입목에 관한 법률」[현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08.5.21.〉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3.12.8. 제정]

제6조(등록과 임야대장)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임야**의 임야대장의 연혁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3.12.8. 일부개정]

제6조(등록과 대장정리)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 개정이유】

◇ 주요골자

나.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입목은 그것이 심어진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입목등록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의 입목에 대하여는 입목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하게 규정함(령 제6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5.21.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현재 입목등록원부에 입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령 제6조)*, 이는「지적법」에 따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입목에 관한 사항은 입목등기부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보호되므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입목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령 제6조)*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 8 법무부 법령해석 (2006. 9. 8.)

입목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2006. 9. 법무부

1. 질의 요지

-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입목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후 입목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등기 말소를 위해 입목등록원부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입목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목이 존재함을 이유로 입목등록원부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음

2. 검토 의견

- 입목법은 입목에 대한 저당권인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림 및 그 사후관리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입목법에 의한 입목의 등기는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으로서,
- 이러한 등기는, ① 입목의 소재와 범위가 등기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② 입목에 관한 물권의 권리변동 과정 내지 태양을 진실하게 나타내어, ③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등기가 되어 공시되고 있는 입목에 대하여 해당 입목이 벌채 등으로 멸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목등록원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입목이 존재하는 한 말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등기한 입목에 관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하여 둘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재판자료 제44집, 법원도서관, 1988, 623면)

참고 9 입목등록원부(등본 · 초본) 발급신청서 서식예시

입목등록원부(등본 · 초본) 발급신청서

1. 토지주소 : _____

2. 입목소유자

○ 성　　명 : _____

○ 주　　소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3. 용　도 : _____

「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 등본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0000. 00. 00.

신 청 인

○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주 민 등 록 번 호 : _____

○ 전　　화 : _____

○ 소유자와의 관계 : _____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산림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